

꿈이 모이는 도시
미래를 그려는 강남

- 전국 최초 12억원 이하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-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」 전부개정 계획

[2026. 1. 22.(목)]



기획경제국
(재 산 세 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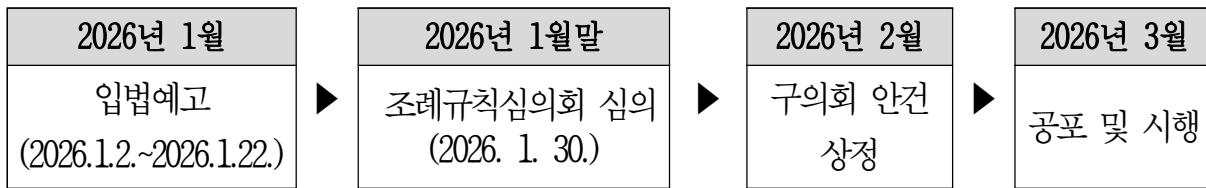
I 개정 개요

- 근거법령**
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【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】
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 【지방세 감면규모 등】
- 행정안전부 「출산·양육 관련 감면 조례 신설 요청」에 대한 승인통보**
 -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-2951(2025. 11. 17.)호
 - (당초)주택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검토 ⇒ (최종)전국 최초 12억원 이하로 승인
- ★ 승인 이후 행안부 시행령 개정추진 : 조례 감면 사유로 “출산·양육 지원” 추가신설
-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의뢰에 대한 검토보고서 통보**
 -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지원팀-1129(2025. 12. 23.)호
 - 정책과제 검토 결과 ⇒ "신설 타당함" 통보

II 주요 개정 내용

- (제13조)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**
 -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 등록 거주자이면서, 미성년자녀 두 명 이상을 둔 부모(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)가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 시가표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
 - 미성년자녀가 두 명인 가구 : 재산세(본세) 50% 감면
 - 미성년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: 재산세(본세) 100% 감면
- (제16조)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조항 개정**
 - 조례에 의한 재산세 면제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상 감면 특례의 제한 【최소납부세제(감면율 100분의 85) 적용】 을 받지 않도록 정함
- (현행 제5조) 관련조례 폐지 ⇒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**
- (부칙 제3조) 신설 감면 규정 적용례 신설**

III 향후 일정



IV 주요 개정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 사유
제5조(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) 「 <u>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</u> 」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. (단서 생략)	<삭 제>	관련조례 폐지에 따른 감면규정 삭제
<신 설>	<p>제13조(디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)</p> <p>과세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미성년자녀 두 명 이상을 양육하는 디자녀 가구의 부모(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.)가 「지방세법」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(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.)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, 그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성년자녀가 두 명인 가구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미성년자녀가 셋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전액을 면제한다. 	감면 조항 신설
제18조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(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. 이 하 이 조에서 같다)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. 다	제16조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(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감면 특례의 제한 조항 개정

현 행	개 정 안	개정 사유
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(이하 생략)		

*이 모이는 도시
미래를 그리는 강남